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2. 0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다. 면적 : 610,808㎡

구분	환경영향평가 초안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예정) 시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근린공원	610,808	100.0	610,808	100.0	

라.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

마. 사업시행자 : 파주시

바. 승인기관 : 파주시

사.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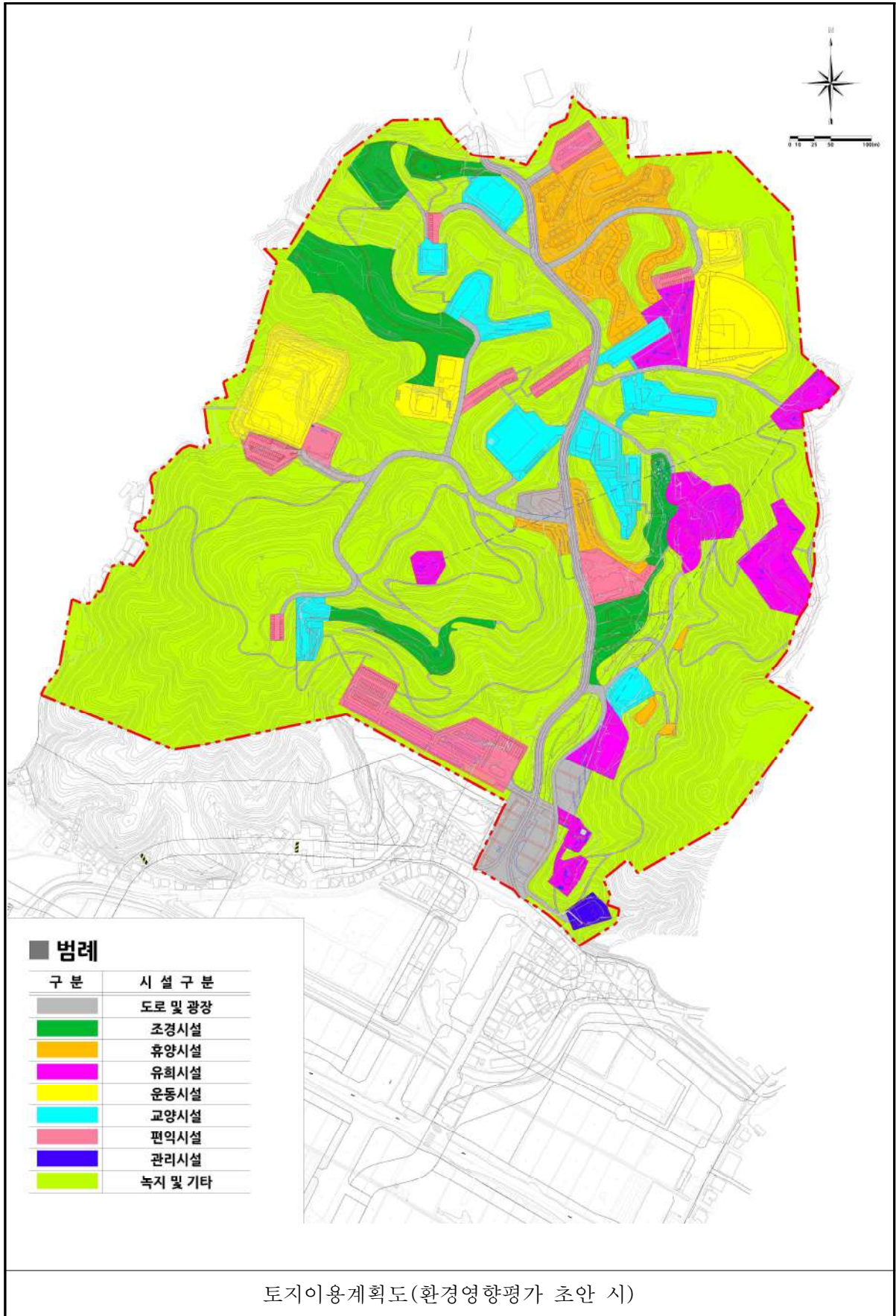
2. 주요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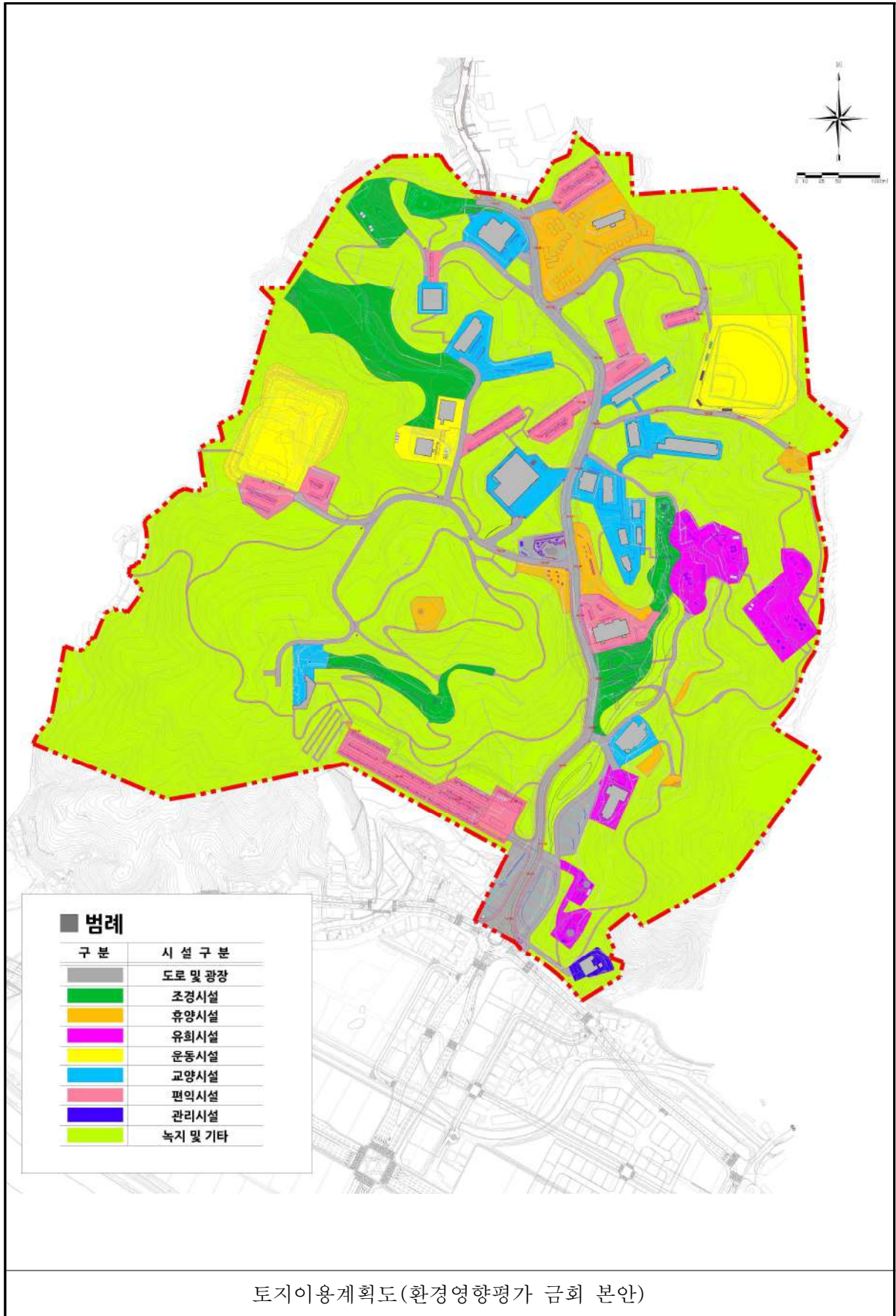
- 2009. 02. 02 : 발전종합계획 확정(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 2011. 05. 31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 2013. 03. 15 :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완료
- 2014. 09. 12 : 사업시행(공원구역 및 근린공원 결정) 승인
- 2015. 12. 31 : 사업시행(공원구역 및 근린공원 결정) 변경 승인
- 2019. 09. 18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01. 05 ~ 01. 1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1. 01. 27 ~ 02. 15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2021. 08. 06 ~ 09. 2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 2021. 09. 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02.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예정

3. 사업의 주요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초안 시		금회 본안			비 고	
	면적 (m ²)	구성비 (%)	면적 (m ²)	증·감	구성비 (%)		
총 계	610,808	100.0	610,808	-	100.0	-	
공 원 시 설	소계	229,970	37.7	213,097	▼16,873	34.9	<u>시설을 37.7%에 서 34.9%로 축소</u>
	도로 및 광장	45,201	7.4	48,254	△3,053	7.9	보행로 등 확보
	조경시설	33,584	5.5	33,374	▼210	5.5	-
	휴양시설	28,429	4.7	19,324	▼9,105	3.2	캠핑장 규모 축소
	유희시설	29,656	4.9	19,477	▼10,179	3.2	짚라인스테이션 제척
	운동시설	33,595	5.5	32,652	▼943	5.3	리틀야구연습장 제척
	교양시설	31,917	5.2	32,121	△204	5.3	-
	편익시설	26,012	4.3	26,621	△609	4.4	주차시설 확보
	관리시설	1,576	0.3	1,274	▼302	0.2	-
녹 지	소계	380,838	62.3	397,711	△16,873	65.1	-
	녹지 및 기타	380,838	62.3	397,711	△16,873	65.1	<u>공원시설을 축소하여 녹지면적 확보</u>





나. 시설배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m ²)			구성비 (%)	건축면적 (m ²)	건축연면적 (m ²)	비고
		초안 시	금회 분안	증·감				
공원면적		610,808	610,808	-	100.0	12,142.71	20,302.79	
시설합계		229,970	213,097	▼16,873	34.9	12,142.71	20,302.79	시설율 34.9%
도로 및 광장	소계	45,201	48,254	△2,456	7.9	-	-	
	도로(소계)	36,094	39,744	△3,650	6.5	-	-	
	광장(소계)	9,107	8,510	▼597	1.4	-	-	
	잔디광장1	2,217	2,097	▼120	0.3	-	-	
	잔디광장2	3,053	2,674	▼379	0.4	-	-	
	잔디광장3	2,087	2,061	▼26	0.3	-	-	
	중앙분수광장	1,750	1,678	▼72	0.3	-	-	
조경 시설	소계	33,584	33,374	▼210	5.5	-	-	
	엄마품동산	2,640	2,560	▼80	0.4	-	-	기 조성
	기억의공간	3,652	3,652	-	0.6	-	-	
	평화물결언덕	14,861	14,861	-	2.4	-	-	
	장자천원	3,199	3,107	▼92	0.5	-	-	
	갤러리원	4,361	4,495	△134	0.7	-	-	
	시크릿가든	4,871	4,699	▼172	0.8	-	-	
휴양 시설	소계	28,429	19,324	▼9,105	3.2	348.00	848.52	
	캠핑장	13,144	11,607	▼1,537	1.9	348.00	848.52	
	오토캠핑장	7,649	-	▼7,649	-			제척
	글램핑장	2,487	-	▼2,487	-			제척
	숲속쉼터1	1,440	1,529	△89	0.3	-	-	
	숲속쉼터2	2,658	2,683	△25	0.4	-	-	
	숲속쉼터3	-	1,448	△1,448	0.2	-	-	신규
	숲속쉼터4	225	289	△64	0.0	-	-	휴게쉼터1
	숲속쉼터5	569	569	-	0.1	-	-	휴게쉼터2
	숲속쉼터6	257	255	▼2	0.0	-	-	휴게쉼터3
	숲속쉼터7	-	27	△27	0.0	-	-	신규
숲속쉼터8	-	917	△917	0.2			신규	
유희 시설	소계	29,656	19,477	▼10,179	3.2	703.41	703.41	
	에코어드벤처	4,739	-	▼4,739	-	-	-	제척
	썰라인스테이션1	2,873	-	▼2,873	-	-	-	제척
	썰라인스테이션2	1,448	-	▼1,448	-	-	-	제척
	썰라인스테이션3	795	-	▼795	-	-	-	제척
	지형놀이터	5,246	5,490	△244	0.9	-	-	
	수변놀이터	2,253	2,280	△27	0.4	-	-	
	모험숲놀이터	6,965	6,512	▼453	1.1	-	-	
	볼링&펍	2,561	2,590	△29	0.4	658.79	658.79	
	반려견놀이터	2,776	2,605	▼171	0.4	44.62	44.62	

시설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초안 시	금회 본안	증·감				
운동 시설	소계	33,595	32,652	▼943	5.3	763.90	765.05	
	조리체육공원	14,091	14,093	△2	2.3	-	-	기 조성
	살내체육센터1	3,142	3,142	-	0.5	395.00	396.15	
	살내체육센터2	1,126	1,226	△100	0.2	368.90	368.90	
	리틀야구연습장	2,979	-	▼2,979	-			제척
	평화야구장	12,257	14,191	△1,934	2.3	-	-	
교양 시설	소계	31,917	32,121	△204	5.3	9,266.24	16,170.57	
	평화뮤지엄	3,276	3,604	△328	0.6	1,057.70	1,057.70	
	트라우마센터	1,460	1,402	▼58	0.2	600.00	1,200.00	
	공원역사관	4,470	4,470	-	0.7	505.50	2,748.88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1	2,123	2,121	▼2	0.3	846.00	1,664.40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2	1,252	1,231	▼21	0.2	362.50	743.20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3	2,770	2,811	△41	0.5	1,007.56	3,022.68	
	복합문화센터	5,101	5,098	▼3	0.8	1,972.89	2,034.64	
	숲속도서관	1,512	1,451	▼61	0.2	420.90	420.90	
	시민창작공방	5,143	5,451	△308	0.9	946.80	1,321.78	
	병커전서관	1,842	1,842	-	0.3	281.02	281.02	
	병커미디어센터	826	487	▼339	0.1	470.00	880.00	
커뮤니티센터	2,142	2,153	△11	0.4	795.37	795.37		
편의 시설	소계	26,012	26,621	△609	4.4	820.08	1,574.16	
	주차장1	2,178	2,597	△419	0.4	-	-	
	주차장2	590	605	△15	0.1	-	-	
	주차장3	898	800	▼98	0.1	-	-	
	주차장4	-	2,702	△2,702	0.4	-	-	
	주차장5	2,173	2,169	▼4	0.4	-	-	기 조성
	주차장6	1,681	1,673	▼8	0.3	-	-	기 조성
	주차장7	1,308	1,492	△184	0.2	-	-	
	주차장8	1,478	2,045	△567	0.3	-	-	
	주차장8(초안)	566	-	▼566	-	-	-	
	주차장9	11,368	8,383	▼2,985	1.4	-	-	
	F&B	3,772	4,155	△383	0.7	820.08	1,574.16	
관리 시설	소계	1,576	1,274	▼302	0.2	241.08	241.08	
	관리사무소	1,576	1,274	▼302	0.2	241.08	241.08	
녹지 및 기타	소계	380,838	397,711	△16,873	65.1	-	-	
	녹지	380,838	397,711	△16,873	65.1	-	-	





시설배치계획도(환경영향평가 금회 본안)

4. 주민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40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4.1 평가서 초안 공람 및 공고

가. 주관(관할)행정기관 : 파주시

나. 관계행정기관 : 경기도, 파주시, 한강유역환경청

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1) 신문공고(변경포함)

- 공고(변경)번호 : 파주시 공고 제2021 - 1717호(1874호)
- 공고(변경)일자 : 2021년 8월 6일(9월 3일)
- 중앙일간지(변경) : 중앙일보(한겨레)
- 지방일간지(변경) : 일간경기(신아일보)

2) 인터넷 게재

-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ss.go.kr/>)

3) 주민공람

- 공람기간 : 2021년 8월 6일 ~ 2021년 9월 27일
- 공람장소 :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 주민의견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파주시 공고 제2021-1717호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6.

파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스 공원조성 [610,808㎡]
- 사업시행자 : 파주시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1. 8. 6. ~ 2021. 9. 3. (20일 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정 : 2021. 08. 27.(금) 14:00
- 장 소 : 조리읍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3층 대회의실(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07)
- 내 용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 설명회 개최 당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설명회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련 알림』(환경부, 2020.3)에 의거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합니다.
 - ※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설명자료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2021.08.27.)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1년 9월 10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평일 09:00 ~ 18:00)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 의견내용 :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공청회 개최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및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로 설명회 입장 제한, 장소변경,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변경공고

파주시 공고 제2021-1874호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공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3.

파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 파주시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610,808㎡]
- 변경사유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기간 연장 및 주민설명회 개최방법 변경(온·오프 병행)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당초) 2021. 8. 6. ~ 2021. 9. 3. → (변경) 2021. 8. 6. ~ 2021. 9. 27.
- 공람장소 :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정 : (당초) 2021. 08. 27.(금) 14:00 → (변경) 2021. 09. 10.(금) 14:00
- 장 소 : 조리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조리읍 봉일천리 210-16)
- 내 용 :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개최방식 : 대면 설명회 및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Zoom 및 유튜브) 병행
-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
 - Zoom : Zoom 앱 다운 후 회의ID(505 951 0750), PW(1234) 입력 또는 참가링크* 클릭
 - 유튜브 :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검색 또는 참가링크* 클릭
- * 참가링크 파주시청 홈페이지>공고·홍보>고시공고 게시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일정 변경 및 사전자료 안내」 참고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1년 10월 04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평일 09:00 ~ 18:00)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및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21.8.2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하며 참여 인원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문광고(중앙일보, 일간경기 8월 6일(금))

중앙일보

2021년 08월 06일 금요일 010면 시화

파주시 공고 제2021-1717호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6.

파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마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스 공원조성 [610,808㎡]
- 사업시행자 : 파주시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1. 8. 6. ~ 2021. 9. 3. (20일 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정 : 2021. 08. 27.(금) 14:00
- 장 소 : 조리읍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3층 대회의실(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07)
- 내 용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 설명회 개최 당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설명회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련 알림」(환경부, 2020.3)에 의거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합니다.
 - ※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설명자료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2021.08.27.)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1년 9월 10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평일 09:00 ~ 18:00)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 의견내용 :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공청회 개최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및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로 설명회 입장 제한, 장소변경,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간경기

2021년 08월 06일 금요일 002면 종합

파주시 공고 제2021-177호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파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스 공원조성 [610,808㎡]
- 사업시행자 : 파주시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1. 8. 6. ~ 2021. 9. 3. (20일 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정 : 2021. 08. 27.(금) 14:00
- 장 소 : 조리읍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3층 대회의실(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07)
- 내 용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설명회 개최 당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설명회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련 알림」(환경부, 2020.3)에 의거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합니다.
※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설명자료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 (2021.08.27.)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1년 9월 10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평일 09:00 ~ 18:00)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 의견내용 :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공청회 개최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및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로 설명회 입장 제한, 장소변경,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문 변경공고(한겨레, 신아일보 9월 3일(금))

한겨레
hanjiree

2021년 09월 03일 **금요일**
016면 **경제**

파주시 공고 제2021-1874호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3.

파주시장

1.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 파주시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스 공원조성 [610,808㎡]
- 변경사유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기간 연장 및 주민설명회 개최방법 변경 (온·오프 병행)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당초) 2021. 8. 6. ~ 2021. 9. 3. → (변경) 2021. 8. 6. ~ 2021. 9. 27.
- 공람장소 :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조리를 행정복지센터(인시청사)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정 : (당초) 2021. 08. 27.(금) 14 : 00 → (변경) 2021. 09. 10.(금) 14 : 00
- 장 소 : 조리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조리읍 봉일천리 210-16)
- 내 용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개최방식 : **대면 설명회 및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Zoom 및 유튜브) 병행**
-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
 - Zoom : Zoom 앱 다운 후 회의ID(505 951 0750), PW(1234) 입력 또는 참가링크 클릭
 - 유튜브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검색 또는 참가링크 클릭
- * 참가링크 파주시청 홈페이지 > 공고·홍보 > 고시공고 게시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일정 변경 및 사전자료 안내」참고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1년 10월 04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평일 09 : 00 ~ 18 : 00)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및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21.8.2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하며 참여 인원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아일보

2021년 09월 03일 금요일
019면 오피니언

파주시 공고 제2021-1874호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3.

파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 파주시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스 공원조성 [610,808㎡]
- 변경사유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기간 연장 및 주민설명회 개최방법 변경(온·오프 병행)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당초) 2021. 8. 6. ~ 2021. 9. 3. → (변경) 2021. 8. 6. ~ 2021. 9. 27.
- 공람장소 :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정 : (당초) 2021. 08. 27.(금) 14:00 → (변경) 2021. 09. 10.(금) 14:00
- 장 소 : 조리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조리읍 봉일천리 210-16)
- 내 용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개최방식 : **대면 설명회 및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Zoom 및 유튜브) 병행**
-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
 - Zoom : Zoom 앱 다운 후 회의ID(505 951 0750), PW(1234) 입력 또는 참가링크* 클릭
 - 유튜브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검색 또는 참가링크* 클릭
- * 참가링크 파주시청 홈페이지>공고·홍보>고시공고 게시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일정 변경 및 사전자료 안내」 참고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1년 10월 04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평일 09:00 ~ 18:00)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 후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및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21.8.2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하며 참여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게재(파주시 홈페이지, 변경공고 포함)

공고·홍보

시정소식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
[고시공고](#)
 채용공고
 도시계획영향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보도·미디어

시정·관광 홍보자료실

도청소식

품앗이홍보

▶ 모바일 워크은 검기운동사업 “파주를 걸자” 참여하세요 운영기간: 7월 - 12월
> 바로가기

고시공고

▶ 공고·홍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 f 0 t 0

고시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담당부서	공영개발1팀	담당자	김동준
등록일	2021/08/06	조회수	7

첨부파일

- 📄 공고(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pdf(download 1) 바로보기
- 📄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pdf(download 1) 바로보기
- 📄 주민의견 제출서(서식).pdf(download 1)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1-1717호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6.
파 주 시 장

공고·홍보

시정소식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
 고시공고
 채용공고
 도시계획영향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보도·미디어 +

시정·관광 홍보자료실

도청소식

품앗이홍보

▶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청 접수기간: 2021.8.17(화)~9.30(목)
▶ 바로가기

고시공고

▶ 공고·홍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f 0 t 0

고시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공고

조회수 : 47	작성일 : 2021.09.03	담당부서 : 불인계안조성과	담당자 : 김동준
----------	------------------	----------------	-----------

첨부파일

- 📄 공고(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변경).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1-1874호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공고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3.
파 주 시 장

* 세부사항 공고문(붙임) 참조

*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사항
 - 당초: 2021.8.27(금) 14:00 비대면 설명회
 - 변경: 2021.9.10(금) 14:00 대면 설명회(주리농림 분점 3층 대회의실) 및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 병행

*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Zoom 및 유튜브) 참여방법
 - Zoom 화상회의: Zoom 앱 다운로드 후, 회의 ID:505 951 0750 | PW(L234) 입력 또는 링크
<https://us02web.zoom.us/j/5059510750?pwd=SDlMVDlnVjZwYjJhZjZpXzZpXU109>
 - 유튜브 생중계: 유튜브 접속 후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설명회' 검색 또는 링크
<https://youtu.be/rLjAn0MxQH0>

□ 인터넷 게재(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주)케이제앤지 | 내어린중광건축사사무소 남

로그아웃 | 개인정보수정 | 사이트맵 | 사용자 메뉴열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및 정보입력
협의를게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협의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평가서 초안 공람

행정처분현황

사용자지원

❖ 평가서 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

사업개요

사업명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파주시
사업구분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지역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술바위골길 141) 통일천리 79-173번지 일원
승인기관	파주시
초안	(캠프하우스_초안) 00000 표지.pdf (캠프하우스_초안) 01000 요약문(라자)(1-14).pdf (캠프하우스_초안) 02000 사업의 개요(15-32).pdf (캠프하우스_초안) 03000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33-38).pdf (캠프하우스_초안) 04000 지역개발(원)(39-56).pdf (캠프하우스_초안) 04001 지역개발도(57).pdf (캠프하우스_초안) 05000 평가항목영위등의 심의결과(59-86).pdf (캠프하우스_초안) 06100 동식물상(87-235).pdf (캠프하우스_초안) 06200 자연환경자산(236-245).pdf (캠프하우스_초안) 06210 기성(원)(247-254).pdf (캠프하우스_초안) 06220 대기질(255-308).pdf (캠프하우스_초안) 06230 분식가스(305-332).pdf (캠프하우스_초안) 06310 수질(수리수문)(333-376).pdf (캠프하우스_초안) 06410 토지이용(377-431).pdf (캠프하우스_초안) 06420 도형(432-446).pdf (캠프하우스_초안) 06430 시행지침(447-470).pdf (캠프하우스_초안) 06510 친환경적자원순환(원)(471-495).pdf (캠프하우스_초안) 06520 소음진동(496-516).pdf (캠프하우스_초안) 06530 위락(원)(517-519).pdf (캠프하우스_초안) 06540 경관(520-550).pdf (캠프하우스_초안) 06610 인구(원)(551-557).pdf (캠프하우스_초안) 07000 환경에미치는영향역시감영안및사후환경영향조사(사후)(559-567).pdf (캠프하우스_초안) 08000 평가피해환경영향(569-571).pdf (캠프하우스_초안) 09000 주민의생활환경채산상의환경우려피해및대책(573-575).pdf (캠프하우스_초안) 10000 대안상행 및 평가(577-581).pdf (캠프하우스_초안) 11000 공영평가 및 결론(각자)(583-594).pdf (캠프하우스_초안) 1200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원)(595-603).pdf (캠프하우스_초안) 13000 부록(605-726).pdf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초안 공고일	2021.08.06
초안 공람 기간	2021.08.06 ~ 2021.09.27
공람 장소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
설명회 장소	조리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
설명회 일시	2021.09.10
의견 제출 기한	2021.08.06 ~ 2021.10.04

목록

4.2 주민설명회

- 일시 : 2021년 09월 10일(금) 14:00
- 장소 : 조리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 사업명 :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 일시 : 2021년 09월 10일(금) 14:00
- 장소 : 조리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조리읍 봉일천리 210-16)

No.	성명	주소	연락처	체온(℃)	호흡기 증상 ¹⁾ (O/X)	해외여행 이력 ²⁾ (O/X)	자가격리 유무 ³⁾ (O/X)
1	이영			36.5	X	X	X
2	김민			36.4	X	X	X
3	김민			36.1	X	X	X
4	김민			36.1	X	X	X
5	김민			36.1	X	X	X
6	김민			36.0	X	X	X
7	김민			36.0	X	X	X
8	김민			36.1	X	X	X
9	김민			36.0	X	X	X

1)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유·무
 2) 최근 2주(14일) 이내 해외 입·출국자 해당 유·무
 3) 최근 2주(14일) 이내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족, 동거인 또는 본인 중 자가격리를 안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유무

No.	성명	주소	연락처	체온(℃)	호흡기 증상 ¹⁾ (O/X)	해외여행 이력 ²⁾ (O/X)	자가격리 유무 ³⁾ (O/X)
10	이			36.5	X	X	X
11	박			36.0	X	X	X
12	김			37.0	X	X	X
13	김			36.5	X	X	X
14	이			36.5	X	X	X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 유·무

2) 최근 2주(14일) 이내 해외 입·출국자 해당 유·무

3) 최근 2주(14일) 이내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족, 동거인 또는 본인 중 자가격리를 안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유무

4.3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가. 관계기관

1) 한강유역환경청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1.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계획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해당의견을 반영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항목별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선행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선행 추진과정인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제시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구에 연접하여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구에 연접하여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도로개설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진경위, 추진과정등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도시개발사업 기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은 제13장에 제시하였음. 	-
1.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 환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는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환경부하 완충과 산림생태계 서식공간 연결성 유지를 위해 동-서 방향 생태연결성 확보가 중요한 지역이며,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에서 참매, 새매, 매, 흰꼬리수리, 소쩍새, 재두루미, 큰기러기, 원앙, 삿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조사되어 사업대상지가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서, 금회 토지이용계획은 동-서 방향 산림생태축 연결성 유지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생태 연결성 단절·훼손이 예상되므로, 	-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1. 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 환경분야	<p>-사업부지 내 기존 산림은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능선부 및 산정에 계획한 시설물(평화야구장 등)을 제척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능선부 시설물 부지와 초지 등은 식생보전등급 IV등급 이상 생태숲으로 조성하고 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산림 내부에 계획한 산책로, 짚라인 등 시설물은 제척하거나 최소화하여 법정보호종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사업부지 내 기존 산림은 최대한 원형보전 하였으며, 능선부 및 산정에 계획한 시설물인 평화야구장 등의 규모를 축소하였음.</p> <p>○능선부 시설물 부지와 초지 등에 해당하는 평화물결언덕, 시크릿가든, 갤러리원 등은 시설물 배치를 최소화 하였으며, 식생보전등급 IV등급 이상의 생태숲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p>○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산림 내부에 계획한 산책로는 기존 미군부대에서 이용했던 산책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하였으며, 식생매트 및 데크 등으로 조성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였음.</p> <p>○야생생물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위치한 짚라인 시설은 제척하여 휴양시설(숲속 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
	<p>○사업부지 내부 공원녹지를 모두 식생보전등급 V등급 초지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부하 증가를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지 내부 공원녹지는 다층 식재를 통한 식생보전등급 IV등급 생태숲으로 계획하고 시설물 조성은 최소화하여야 함</p> <p>-조경시설의 구체적인 식재계획 수립과 함께 이를 토대로 공원·녹지별 목표 수목 피도(Cover)를 설정하고 유지·관리계획 수립</p>	<p>○사업부지 내부 능선부근에 위치한 조경시설부지(평화물결언덕, 시크릿가든, 갤러리원)는 다층 식재를 통한 식생보전등급 IV등급 생태숲으로 계획하고 시설물 조성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p>○조경시설의 구체적인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태숲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p>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1.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 환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시설 전체를 식생보전등급 V등급 조치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소 수목 피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영향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조경시설의 수목 피도를 최소 70% 이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시설 전체를 식생보전등급 V등급 조치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였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영향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조경시설의 수목 피도를 최소 70% 이상 확보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목만을 대상으로 훼손수목이 총 7,347주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교목 151주만을 이식하는 계획은 적절한 훼손수목 이식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훼손수목 이식·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식생조사표에 신갈나무, 갈참나무 등 자생종 아교목이 조사되었으므로 아교목을 포함하여 총 훼손수목량을 재산정하고, 자생종 아교목을 중심으로 총 훼손수목량의 최소 10% 이상 훼손수목을 사업부지 내부 녹지에 최대한 이식·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이식대상 훼손수목량 및 수종, 가이식장 위치 및 규모(면적), 이식대상지 등 구체적인 훼손수목 이식계획 사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교목을 포함하여 총 훼손수목량을 재산정하고, 자생종 아교목을 중심으로 총 훼손수목량의 10%를 사업부지 내부 녹지에 최대한 이식·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이식대상 훼손수목량 및 수종, 가이식장 위치 및 규모(면적), 이식대상지 등 구체적인 훼손수목 이식계획을 수립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측구 등 저감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을 위해, 사업부지 경계부를 따라 배수로 등 시설물 설치 계획을 제시하고, 계획된 배수로 등에는 소형동물 접근방지 및 탈출을 위한 울타리, 생태측구 또는 덮개 등 생태영향저감시설을 설치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생태영향 저감시설에 대하여 설치계획(설치수량, 설치위치가 표시된 계획도면, 설계도면 등)을 상세하게 제시 -소형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생태측구 설치 간격은 최대 2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내 계획된 생태영향 저감시설은 배수로(U형 측구)에 수로 탈출시설을 20m 간격으로 총 104개소 설치하는 것과 메인주차장과 인접한 산림경계부 주변으로 침입방지웁스(유도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생태영향 저감시설에 대하여 설치수량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1. 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 환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내 야간조명 설치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대상지 내부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산림 내부에 위치하는 입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가로등 및 옥외조명 등 야간조명 설치는 최소화하고, 야간조명은 최대한 지면과 가까이 설치하여 조명 확산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 - 가로등 및 옥외조명은 폴 형이 아닌 사업부지 내부만을 비출 수 있도록 볼라드 등(잔디 등) 형태로 설치하고, 수목등 등 상향등 설치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음. - 사업부지 내 가로등 및 옥외조명 등은 이용자의 안전성 및 보안 등의 사유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명을 제외하고 야간조명 설치는 Semi-cutoff형 방식의 조명(LED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가로등 및 옥외조명은 안정성 및 보안을 위한 CCTV, 안전벨 등이 함께 설치하기 위해 폴 형식으로 계획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 시, 운영 시 조사계획(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치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조사계획(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치도 제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시기는 사업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운영시 조사계획은 제외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보호종별 서식·출현 변화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법정보호종 서식·출현 변화에 따른 추가 보전대책 또는 저감대책 수립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보호종별 서식·출현 변화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법정보호종 서식·출현 변화에 따른 추가 보전대책 또는 저감대책 수립 여부 확인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활용한 조사방법을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에도 동일하게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 공사 및 운영 시 나타난 법정보호종 서식 영향을 정확하게 비교·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활용한 조사방법을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에도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공사 시 법정보호종 서식 영향을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기는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시기와 최대한 유사한 시기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기는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시기와 최대한 유사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1. 항목별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 환경 분야	○ 공사 중 우기 시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수계영향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조사	○ 공사 중 우기 시(6~9월) 하천수질 현황조사를 월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사유출 저감시설(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의 관리현황을 매월 1회 실시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 조경시설 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계획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지 여부	○ 생태숲으로 조성되는 조경시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계획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제시하였음.	-
	○ 녹화(경관녹지, 완충녹지 등)공정 현황 및 공정률 조사결과	○ 녹화(경관녹지, 완충녹지 등)공정 현황 및 공정률 조사결과 조사계획을 제시하였음.	-
	○ 협의된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온전한 기능 수행 여부 조사결과	○ 공사시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 야간조명 설치 현황 및 빛공해로 인한 생태영향 발생 여부	○ 야간조명 설치 현황 조사 등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였음.	-
	○ 생태계교란 식물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공사 시 분기 1회 이상 운영 시 반기 1회 이상 조사	○ 생태계교란 식물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공사 시 분기 1회 이상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시기는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운영시 조사계획은 제외하였음.	-
나. 수환경 분야	○ 사업지구 내 토양의 입도분석, 침사지 저감효율, 토사유출수 유입 수계의 부유물질농도 영향예측을 포함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침사지 설치계획(위치, 제원, 개소 수 등) 수립·제시 - 가배수로의 홍수 소통량 규격 만족 여부를 포함한 제원 제시 - 부유물질 목표수질 농도를 설정하고 목표농도 초과 시 원인 분석을 통해 저감대책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지구 내 토양의 입도분석, 침사지 저감효율, 토사유출수 유입 수계의 부유물질농도 영향예측을 포함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침사지 설치계획(위치, 제원, 개소 등)을 제시하였음. - 가배수로의 홍수 소통량 규격 만족 여부를 포함한 제원을 제시하였음. - 부유물질 목표수질 농도를 설정하고 목표농도 초과 시 원인 분석을 통해 저감대책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 시 사업지구 남측 인접 수계(문헌조사 W-3* 지점)를 추가 선정하여 수질모니터링 실시	- 공사 시 사업지구 남측 인접 수계(문헌조사 W-3* 지점)를 추가 선정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음.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나. 수환경 분야	<p>○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에 따라 동 사업 시행 전·후의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및 삭감부하량 산정·제시</p>	<p>-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에 따라 동 사업 시행 전·후의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및 삭감부하량 산정하여 과주시와 할당 협의를 완료하였음.</p>	-
	<p>-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고, 같은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p>	<p>-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고, 같은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음.</p>	-
<p>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p>	<p>○ 급경사지,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등급, 생태자연도, 경관의 양호성, 자연자원, 기 개발지역, 산정 및 능선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용지를 산정하고 시설물 입지는 개발가능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 존치 시설물과 기 조성 시설물, 철거 시설물, 신규 계획 시설물 등을 토지이용현황도에 중첩하여 작성·제시</p> <p>- 다수의 직교하는 중단선을 설정하여 각각의 중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절·성토고 및 사면의 크기 명시(부지 형태, 사면 높이, 현 지반고 및 지형 함께 표시)</p> <p>- 표고가 높고 급경사지에 위치한 시설물은 입지 조정 검토</p>	<p>○ 경사도 20도 이상, 식생보전등급 III등급, 국토환경성평가등급 1등급이 중첩되는 부지는 최대한 보전 가능한 녹지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산책로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 산책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신규 계획된 산책로는 최소 규모의 식생매트 및 데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p>- 존치 건축물 및 시설부지, 기 조성시설 및 신설건축물 설치부지 현황을 토지이용계획도에 중첩하여 제시하였음.</p> <p>- 다수의 직교하는 중단선을 설정하여 각각의 중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절·성토고 및 사면의 크기 명시(부지 형태, 사면 높이, 현 지반고 및 지형 함께 표시)하였음.</p> <p>- 신설건축물 설치부지는 보전용지에 해당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p>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라. 생활환경 분야 1)경관	○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이 예상되는 주요지점을 조망점으로 추가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다시 예측하고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조정 등의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이 예상되는 주요지점을 조망점으로 추가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다시 예측하여 제시하였음.	-
	-주차장 등과 같은 대형 면적의 시설을 설계할 때는 지형 변화 최소화 방안 검토·제시	-주차장 등과 같은 대형 면적의 시설을 설계할 때는 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계획하였음.	-
	-झ라인 및 झ라인스테이션에 대한 경관분석 및 검토 내용 추가 제시	-झ라인 및 झ라인스테이션은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산정 및 능선부에 입지하는 시설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과 시설물로 인한 이질적 경관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 끝.	-산정 및 능선부에 입지하는 시설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과 시설물로 인한 이질적 경관변화 등 예측하여 제시하였음.	-

2) 경기도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검토의견	<p>○양쪽 산림이 공원 조성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동-서 방향의 지형 연결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특히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인접한 북쪽 지형을 원형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p> <p>-생태계 연결성 확보 등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추후 반영' 한다고 제시되어있어 본 평가서 초안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의견수렴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개할 때 최대한 고려·결정되어 기존 계획과 비교제시되어야 함</p> <p>※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북측 시설을 남측으로 조정·배치,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인접한 시설물 입지 변경 등을 통해 생태계 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휴양, 유희시설 등이 계획됨에 따라 협의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p>	<p>○양쪽 산림이 공원 조성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조경시설 내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동-서 방향의 지형 연결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인접하여 계획한 시설물 중 짚라인, 리틀평화야구장 등을 제척하여 최대한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
	<p>○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중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인접한 기존 군부대 시설물 미철거로 생태축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의 단절을 방지한다고 제시한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람</p>	<p>○야생생물보호구역과 인접한 기존 군부대 시설을 보존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미군부대 경계부에 철제웁스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오픈공간을 마련하여 야생동물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음.</p>	-
	<p>○사업 부지는 과거 주한미군기지 이전 용지로 오염 토양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검증을 완료하였으나, 정화검증 완료 후에도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공 전 토양오염 조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p>	<p>○금회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전 토양오염 조사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수립하여 제시하였음.</p>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검토의견	<p>○ 현지조사 결과 샬, 수달, 매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과 황오리, 도롱뇽 등 경기도 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사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법정 보호종 및 경기도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되면 공사 시행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p>- 양서류의 경우 회피반경이 넓지 않아 개체군 감소가 예상되므로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추가 조사하여 서식지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시기 바람. 또한 서식지가 사업구역 내 위치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 보호종 외에도 다양한 개체가 확인되었으므로 공사 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p>	<p>○ 사업지구 공사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법정보호종 및 경기도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되면 공사 시행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p>- 양서류(맹꽁이)의 경우 우기시(7~8월) 사업지구 내 서식지 여부 조사 결과 사업지구 남측으로 약 200m 이격된 팔봉천 인근 아성체 1개체가 발견되었으며, 공사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p>	-
	<p>○ 운영 시 야간조명 등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사업지구 내 조명시설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이용객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등에 따라 빛공해에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운영 시 야간조명 등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사업지구 내 조명시설 설치는 이용객의 안전성 및 보안 등의 사유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명을 제외하고 야간조명 설치는 Semi-cutoff형 방식의 조명(LED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
	<p>○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적용,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p>	<p>○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고효율 LED 조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
	<p>○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제시하시기 바람</p>	<p>○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제시하였음.</p>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순환골재 사용량과 사용지점을 설계 도면에 명시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순환골재 사용량과 사용지점을 설계 도면에 명시하여 제시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으로 자연 표면이 불투수면으로 변경되면서 우수유출량이 증가하고 비점오염원이 유출되므로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의 적용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제시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축사 및 교육시설이 있어 공사차량으로 인한 먼지 및 소음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저감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생중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공사차량으로 인한 먼지 및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을 수립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일(인·허가·승인일, 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 규모 등을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일(인·허가·승인일, 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 규모 등을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

3) 파주시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검토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시 포획 채취,이동(이식)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시 포획 채취,이동(이식)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사업지구가 위치한 삼림지역은 인근 삼림지역과 단절되어 있어 사업지구 확대 시 서식 중인 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사업지구 내 기존 삼림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미군부대 경계부에 철제휀스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오픈공간을 마련하여 야생동물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음.	-
	○사업지구 개발 시 훼손되는 식생에 대해 최대한 이주 또는 이식하여 식물상을 보전하여야 함.	○사업지구 공사 시 훼손되는 수목에 대하여 이식계획을 수립하였음.	-
	○사업승인부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2항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경기도지사)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함.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2항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경기도지사)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규정에 따라 재협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겠음.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검토의견	-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및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규정에 따라 재협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
	○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 공사규모가 1,000㎡이상으로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를 득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사업지구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득하겠신고(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를 읍.	-
	○ 공사 시행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공사 시행 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 공사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동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단,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됨.)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지구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으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설치 할 경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설치 할 경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진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3호 가목 제외) 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21조,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변경협의 포함)의 대상사업인 경우 부하량 협의를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28조에 따라 과주시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았으며, 같은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음. 	-

나. 제출된 주민의견

구분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조○○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행사에 맞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설명회는 2021년 09월 10일에 대면(오프라인) 설명회 및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 동시 진행으로 계획하여 시행하였음.	-
	○물놀이 시설이 있어 물길로 물을 들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을꺼 같아 제안 드립니다.	○사업지구 내 조명설비 중 태양광 전지판을 포함한 설비를 주차장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음.	-

다.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자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주민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경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동물들이 사업지구 경계라인을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원조성사업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업지구 경계 펜스는 콘크리트 기초에 말뚝이 박혀져 있고, 철제펜스로 되어 있어, 기존 경계시설을 보존할 계획이며, 추후 적절한 위치에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조성하였음. · 금회 사업은 2026년도까지 약 529억원으로 3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며, 1단계는 2022년 말까지, 2단계 2024년, 3단계 2026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임. 	
주민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출입구가 몇 개로 조성될 예정인지와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 차량이 이동하는데 마을 주민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출입구는 정문 1개소와 엄마품동산 인근 후문 1개소 총 2개소로 조성할 계획이며, 공사 시 공사차량에 대한 마을주민 피해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및 공사차량 입구에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주민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설명회 이전 조리읍사무소에서 공원 계획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축구장, 야구장보다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실내체육관내 수영장 등 조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회를 들어보니 반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은 확정이 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같은 경우 본 공원과 인접한 파주스타디움에 2022년도까지 실내수영장 조성 계획이 있어 이곳에 주민분들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캠프하우즈 안에 수영장 조성은 존치 건물 규모 및 컨셉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주민들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은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단계별 추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추진 중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와 공원조성 구역 경계선 배치는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원 진입에 문제 없도록 하겠음. 	

의견 제출 자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주민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 목적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조성인지 과주시를 대표하는 휴양시설인지 구분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수영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 운동시설을 배치해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분들의 과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것에 대한 일부 반영하여 평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였으며, 평화공원도 혼재되어 조성할 계획임. 특히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볼링핍, 벙커 미디어아트센터 등을 계획하였음. 주민분들이 보다 더 편히 이용하실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음. 	
주민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사업은 미군부대 공여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사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50년 이상 피해를 보신 지역 주민이 우선시 되어야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의견 수렴이 거의 안된 것 같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주민 수렴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다른사업에 비해서 주민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칠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따로 토론회 같은 구체적인 일정은 있으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실시계획인가 열람 전 공고까지 주민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도의 토론회 일정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내용 중에 법정보호종 11종이 발견되었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현황 조사시 삶, 원앙, 황조롱이 등 11종이 발견되었고, 실제적으로 대부분 조류로서 하늘에서 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삶은 사업지구 내에서 배설물 형태로 조사되었는데, 공사시 법정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 비상보전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현재 철제웬스로 채워져 있는 부분 중 어느정도 오픈공간을 마련하여 동물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의견 제출 자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주민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사업보다 먼저 공원조성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봉일천4리 주민들은 생각보다 못한 모든 것들이 뒤쳐져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기존 사업자 문제로 무산되고, 현재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캠프하우스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수용지역 안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운영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여 수립하겠음. 	
주민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일천4리는 달동네 수준으로 정리가 너무 안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공원조성도 좋지만 주민들을 먼저 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일천4리 주민분들이 충분히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탱크를 이용해서 실계천을 조성하자고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공원 내 산책로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인데 실계천이 개설이 된다면 평상시 산책하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하우스 안에 하루에 30톤정도 물이 나오는 약수터처럼 되어 있는 시설이 있으며, 그 물들이 캠프하우스 정문쪽으로 유하하여 공릉천에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됨. 크계는 아니지만 이 물들을 활용하여 수변(놀이터)공원을 조성하여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분들은 공원 부분 중 산책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담장으로 막아 놓았는데 개방을 좀 해주셔서 조리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하우스는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후 개방할 예정임. 	
주민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과 마을 사이에 담장을 완전히 오픈은 아니더라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조성 시 담장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주민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설명회 못오신 분들을 위하여 녹화본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된 주민설명회 온라인 설명회는 유튜브 접속을 통하여 다시 시청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https://youtu.be/rLiAnOMxQHo) 	

의견 제출 자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온라인 생중계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길높이터 부분에 물을 어디서 끌고 오는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프하우스 안에 중앙부쪽에 하루에 30톤정도 물을 활용하여 계획하였음. 	
온라인 생중계 (유튜 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운정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된 조리읍을 보면 주민으로써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공원 내 야구장 대신 다른시설로 조성해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내 야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실내체육관, 숲속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도 조성할 예정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읍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교통이 너무 낙후되어 조리읍 발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원리 주변 캠프하우스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에 따라, 도로개설 후 교통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인구 또는 유입인구는 어떤 식으로 산정하였나요? 공원 이용시 자차로 이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랜드마크 조성시 평화누리공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한 홍수주의 지역으로 공사로 인한 수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내 존치된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양측 보도를 설치하여 공원 내 시설을 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차량방문을 위한 주차시설도 별도로 계획하였음. 캠프하우스는 미군 존치건물 리모델링 등 과거 미군이 주둔하였던 공간적 특성을 보존하여 조성한다는 점이 다른 공원과의 차별성이 있음. 공원조성 시 발생하는 배수(우수)처리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홍수 등 재해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문제없이 조성토록 하겠음. 	